

「학칙 및 학칙시행세칙」 개정(안)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안내

「학칙 및 학칙시행세칙」 개정을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7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8. 04. 24(화) 12:00까지 자유 양식에 따라 기재한 의견을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처 : 교무처 교무팀

– 이메일(haksa@konyang.ac.kr) / 전화번호 : 041-730-5121

붙임 : 학칙 개정(안) 1부. 끝.

2018년 04월 13일

교 무 처 장

「학칙」 개정(안)

□ 개정 사유

1. 육군본부의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여학생 선발 협조 요청
→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름

[인권위 권고사항]

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여성의 지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군가산복무지원금 제도를 개선할 것

[육군본부 검토 결과]

- 여군인력 확대 및 여군 인사관리 개선으로 여군의 활용성이 강화될 것을 고려하여,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에 있어 여성의 지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
-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 시 선발자격 개선 : 자격기준 '남성' 한정→자격기준 '성별' 삭제

□ 개정 내용

구 분		입학정원 조정(안)			비 고
		2018	2019	증감	
군사경찰대학	국방경찰행정학부	55	60	+5	단과대학 내 조정
	군사학과	45 (남 40, 여 5)	40 (남 35, 여 5)	-5	

※ 입학정원 총원 : 변동 없음(1,713명)

「학칙시행세칙」 개정(안)

□ 개정 사유

1. 복학에 대한 시기를 규정으로 명시 : 수업일수 1/5 이내까지 복학을 허가함

□ 신규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1조(복학) ① 일반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매학기 개강 전(등록기간)에 복학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군입대휴학자는 개강일 이전에 전역한 경우에는 복학 해당학기 수업일수 1/5선 이전에 복학하여야 한다.</p>	<p>제71조(복학) ① 일반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매학기 개강 전(등록기간)에 복학하여야 한다. <u>단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강일 이후에 복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업일수 1/5 이전까지 복학하여야 하며, 수업일수는 개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</u></p> <p>② <생략></p>
<p><신 설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1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4월 00일부터 시행한다.</p>